



##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 문 부친 생전에 받은 재산, 유산의 일부인가

문》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서를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저와 형이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 자금으로 아버지 재산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께서는 형에게 미리 주신 재산은 형이 훗날에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 형은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의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유산 갖고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형이 미리 받은 뭔가 하도 커기에 거기로 대응하는 저의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답》 첫째, 귀하의 선친께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선친께서는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에 따라 무유언 사망자(Intestate)로 규정되며 선친의 재산은 귀하와 형이 법정 상속인(Heir)으로서 법이 정해주는 지분을 동등하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형이 선친의 재산을 선친 생전에 미리 받았다면 귀하는 그러한 재산의 분배가 유산선대금

(Advancements)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6409(a)조에 의하면 개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개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에게 미리 분배한 재산은 그 상속인이 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하는 유산선대금으로 간주되며, 후에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의 지분에서 유산선대금의 양을 감하게 됩니다. 단, 미리 받은 재산의 뜻을 유산선대금으로 간주하고 상속지분에서 감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생존 당시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배할 때, 그 재산이 상속인이 받을 유산의 선대금임을 밝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상속인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부친이나 형이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귀하와 형은 부친이 최종적으로 남긴 유산에 대해 법정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형이 더 많은 양의 유산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문 부부 공동 재산, 전처의 자식에게만 다 물려줄 수 있는지

문》 저는 68세의 할머니입니다. 얼마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재혼한 부부로 3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고 둘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주에 20년전에 이민왔으며 둘이 모은 돈으로 집을 하나 장만하였습니다. 집은 남편의 이름으로만 매입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에 의하면 남편의 아들이 이 집을 모두 차지하는 상속자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에 대하여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물론 가능합니다. 귀하와 남편이 장만하신 집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남편 단독으로 집 전체를 그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속

법 제28(a)조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개인 재산을 규정짓는 예외법에 따로 적용받지 않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와 남편이 장만하신 집은 설사 남편의 명의로만 구입됐다 해도 귀하와 결혼 기간 중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그 성격이 부부공동재산이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 100조에 의하면 결혼한 자는 부부공동재산의 50%만을 개인이 작성한 유서에 따라 개인이 지정하는 상속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생존한 배우자의 뜻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에 대해 50%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남편이 남긴 유서에 따라 전처의 아들이 갖게 됩니다.

## 문 개인 자필 유서(Holographic Will)란

문》 저는 73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와 둘이서 L.A.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한국인 변호사가 없어서 유서 작성이 걱정입니다. 개인이 혼자 작성하는 유서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할지요.

답》 유서는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증인 입회 하에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제6110조가 요구하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추어 작성하는 유서, 둘째, 증인 없이 개인의 친필로 작성하는 유서(Holographic Will)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기로서는 전자의 유서를 권해드리나 피치 못할 경우, 개인이 친필로 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자필 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반드시 개인이 친필로 유서를 써야 합니다. (2) 유서 작성 목적이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소유재산을 최종적으로 유서가 지시하는 대로 상속하는 것임을 명백히 표명해야 합니다. (3) 개인이 친필로 유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4) 유서를 작성한 날짜를 개인의 친필로 유서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조건들은 개인 자필유서 작성의 기본이나 캘리포니아주의 유산 상속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유서의 형식과 내용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답』은 독자들이 엮는 페디입니다. 이민 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답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시거나, 질문서신에는 낫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답은 헤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 LA, CA90010